

제 22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16.10.26.)

조례안 검토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허 동 현]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6. 9. 23.

나. 발 의 자: 김종두 · 표주숙 · 박희순 · 변상원 · 이흥희 ·
강철우 · 최광열 · 형남현 · 이성복 · 권재경 ·
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인용조문을 일체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조항 및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7조)

- 결산승인에 관한 규정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 부분 삭제
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에 맞게 개정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생략이 가능한 조항 삭제

나.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를 “ 4명 ”으로 구체화(안 제2조)

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, 제8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, 재무과(경리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6. 10. 12 ~ 10. 19

(나) 예고결과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거창군 결산검사의 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그 밖에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의결정족수)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및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1.12.>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16.1.12.> **[시행일 : 2017.1.1.] 제84조**